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·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2013. 2. 22 규칙 제217호]

일부개정 2015. 10. 30 규칙 제281호
일부개정 2019. 12. 26 규칙 제372호
(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·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제2조(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현장조치) 「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·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1.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
2.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
3.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
4.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

제3조(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)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1. 다른 공사로 손괴된 시설물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
2. 다른 공사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경우
3. 다른 공사로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때 그 압력이나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
4.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
5. 그 밖의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아 손괴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

제4조(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) ① 조례 별표 1의 산정 부과물량과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업계획서에 1일 급수 추정량이 있는 경우 많은 것을 적용한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전체규모로 산

출하며, 세부기준은 제1항과 동일하다. 다만, 증축 또는 증설 이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③ 누수 및 퇴수량을 산정할 경우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점부터 최근거리의 제수밸브 조작완료 시간까지로 한다. 다만, 누수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한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④ 단수된 지역에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 사용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⑤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군수가 결정한다. 다만,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⑥ 출장경비 중 직원에 대한 경비를 산정할 경우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, 인원은 수도시설 공사,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인원 중 최소한의 적정 인원으로 한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1. 수도시설 공사 및 원상복구 작업 감독자
2. 수계조절 등 작업자
3.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
4. 급수차 운행 안내자
5. 그 밖의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

제5조(원인자부담금의 협약) 원인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·산정방법,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사업승인 또는 허가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소규모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제6조(원인자부담금의 부과·징수)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 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첨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1. 공사명 또는 사업명
2. 위치(위치도 포함)
3. 공사개요(용도, 연면적, 세대수 등을 기재)

4. 시설물 현황도면 및 수도 관련 도면
5.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 1부(공장일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수돗물 일일 계획 사용량)
6.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

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1. 확인서(별지 제2호서식)
2. 손괴(누수)사항과 손괴(누수)현장위치 및 상세도
3. 배수량 산출
4.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
5. 피해물증,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
6. 그 밖에 손괴(누수)시 증거 자료

③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1. 공사명 또는 사업명
2. 납부금액
3. 납부장소
4. 납부자
5. 납부기한
6.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

④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 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납입서를 원인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⑤ 원인자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일시 또는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⑥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이의신청) ①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

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「지방세법」 제73조를 준용한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제8조(과오납금의 환부)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 착오납입, 이중납입, 납입 후 부과의 취소,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여금을 지체 없이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, 지급절차, 지급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③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. 다만, 과오납금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제9조(수도시설 손괴시 원인자조치)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
2. 누수 등으로 주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

제10조(다른규정의 적용)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」 및 「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」을 따른다.〈개정 2015. 10. 30, 2019. 12. 26〉

〔제목개정 2019. 12. 26〕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 10. 30 규칙 제281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12. 26 규칙 제372호,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〈개정 2015. 10. 30〉

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(제5조 관련)

증평군 ○○읍·면 ○○리 ○○번지 일원 ○○○○사업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「수도법」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증평군수와 원인자와의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.

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_____에서 시행하는 _____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「수도법」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증평군수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_____(이하 "을"이라 한다) 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) _____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.

1. 원인자분담금 : _____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
2. 추가사업비 :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

제3조(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) "을"은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.

제4조(원인자부담금 사용) "을"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증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증평군 수도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.

제5조(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) "을"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"갑"이 조성한 수도 사업 총 사업비를 ㎥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,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.

제6조(원인자부담금의 금액) 제4조에 따라 "을"이 부담하여야 원인자부담금은 ○○○천원으로 한다.

제7조(부담금 납부) ① "갑"은 "을"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

협조하며, 자금 투입계획을 “을”과 협의한다.

② “을”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“갑”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.

제8조(자료제출) “갑”은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“을”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설의 귀속 등)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“갑”에게 귀속되며, 관리책임은 “갑”에게 있다.

제10조(보칙)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,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(갑) 증 평 군 수

(을) 주 소 :

성 명 : (인)

[별지 제2호서식] (제6조제2항제1호 관련)〈개정 2015. 10. 30〉

확 인 서

○ 공 사 명 :
○ 시 행 청 :
○ 시공회사 :
○ 주 소 :
○ 대 표 자 :
○ 전 화 :

상기 회사는 본 사업장내에서 공사 중 상수도관 구경 = ( )부분을 20 . . .시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며,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그 밖에 설계사항에 대하여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.

누 수 위 치 :
누수 발생시간 :
누수및통수시간 :
누 수 구 경 :
누 수 원 인 :
손 괴 상 태 :

. . .

확인자 : (주 소)
(상호 또는 성명)
(생 년 월 일)

증 평 군 수 귀 하

[별지 제3호서식](제6조제4항 관련)

납 입 서

제 호	년도	상수도사업 특별회계
(관)	(항)	
(세항)	(목)	

₩
(일금 원정)

단. 상수도○○○부담금(○차분)

위 금액을 납입함.

년 월 일

○납입자 :

증평군 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
직·성명 (인)

영 수 증

제 호	년도	상수도사업 특별회계
(관)	(항)	
(세항)	(목)	

₩
(일금 원정)

단.납입기한 : . . (○차분)

위 금액을 영수함.

년 월 일

○납입자:

출납취급금융기관 (인)

수 입 원 귀하

영수필통지서

제 호	년도	상수도사업 특별회계
(관)	(항)	
(세항)	(목)	

₩
(일금 원정)

단.납입기한 : . . (○차분)

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.

년 월 일

출납취급금융기관 (인)

기업출납원 귀하

납입자			
기 업 출납원		취급자	
수입금 출납원		기 장	

[별지 제4호서식](제7조제1항 관련)〈개정 2015. 10. 30〉

이 의 신 청 서

신청자	성 명		생년월일	
	사업자등록번호		주 소	
	상 호		전화번호	
처 분 청				
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 월 일 (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 월 일)				
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				
이 의 내 용				

「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·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인)

증 평 군 수 귀 하

첨부서류 :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

[별지 제5호서식](제8조제2항 관련)〈개정 2015. 10. 30〉

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통지서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성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생 년 월 일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주 소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상 호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과오납입</td><td>○ 차분</td><td>정당납부
(납부액)</td><td>기납부
납입액</td><td>과오
납입</td><td>과오납
년 월 일</td><td colspan="2">환 부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일시</td><td>금액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과오납 합계액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충당 후 잔액
(환부액)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충당금액</td><td>○ 차분</td><td>미납금액</td><td>충당금액</td><td colspan="4">과 오 납 된 사 유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충당금액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충당후
미납액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/table>

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「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·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증 평 군 수 (인)

[별지 제6호서식](제8조제4항 관련)〈개정 2015. 10. 30〉

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

수 신		증평군수			
성 명			생년월일		
년 월 일	○차분	내용	과오납 금액	환부이자	청구금액

위 과오납금을 「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·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청구자 주 소 :
성 명 :
생 년 월 일 :

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

수 신	증평군수				
년 월 일	○차분	내용	과오납 금액	환부이자	영수금액

위의 금액을 영수함

년 월 일

영수자 성명 (인)